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

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조례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최초 설치로부터 3년 이내(연장
필요시 최대 1회)만 존치토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자치구 포함)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연장 횟수 제한 없이 존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사와 출연기관의 경우 시민의 지속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빛과 소음을 차단하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더라도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다시 철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서울시 공사와
출연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도
존치 기간의 제한이 없도록 하여 매몰 비용의 발생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